

원스토어 주식회사

정 관

제정 : 2016. 3. 1

개정 : 2016. 3. 2

개정 : 2019. 9. 10

개정 : 2021. 3. 30

개정 : 2021. 4. 27

개정 : 2022. 3. 29

개정 : 2025. 3. 28

개정 : 2025. 12. 1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원스토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하고, 한글로는 원스토어 주식회사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One store Co., Ltd.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보통신사업 및 통신과금서비스업
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소프트웨어사업
3.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제공업
4. 별정통신업, 부가통신업 등 전기통신사업
5. 게임물의 제작, 배급, 제공업

6.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7.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의 제작, 배급, 제공, 운영 및 뉴미디어 사업
8. 출판업
9.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 등 전자상거래업
10. 전자금융업
11. 데이터베이스, 정보프로그램 작성 및 정보제공업
12. 광고업 (2021.3.30 본 호 신설)
13. 기타 위 각호의 사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2021.3.30 본 호 개정)
14. 기타 위 각호의 해외사업 및 위 각호의 사업에 부수 또는 수반되는 사업
(2021.3.30 본 호 개정)

제 3 조 (본점 및 지점)

- ① 회사는 경기도 과천시에 본점을 둔다. (2025.3.28 본 항 개정)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nestore.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 주로 한다. (2021.3.30 본 조 개정)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00 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019.9.10, 2021.3.30 본 항 개정)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021.3.30 본 항 신설)

제 9 조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2021.3.30 본 조 개정)

제 9 조의 2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내용과 수)

-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의결권 유무는 우선주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 한도는 제 5 조에서 정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00 분의 50 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연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 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⑤ 무의결권 우선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가 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의 범위 내에서 우선주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누적적 우선주에 대하여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⑦ 회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적 권리가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021.3.30 본 조 신설)

제 10 조 (전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주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 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 년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생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11 조 제 4 항을 준용한다. (2019.9.10, 2021.3.30, 2022.3.29 본 조 개정)

제 10 조의 2 (상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한다.
- ③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 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④ 회사는 상환청구기간의 단축 및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가액 등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2021.3.30 본 조 신설)

제 10 조의 3 (상환전환 우선주식)

- ① 회사는 제 9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 10 조 및 제 10 조의 2 를 준용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불구하고 우선주식의 전환 및 상환과 관련하여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은 해당 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2021.3.30 본 조 신설)

제 11 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021.3.30, 2025.12.10 본 항 개정)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2025.12.10. 삭제)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6. (2025.12.10. 삭제)
 7.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④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 11 조의 2 (주식의 양도) (2021.3.30. 삭제)

제 11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025.12.10. 본 항 개정)
- ② (2025.12.10. 삭제)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2025.12.10. 본 항 개정)

- 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025.12.10. 본 항 개정)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 1 호와 제 2 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⑤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2025.12.10. 본 항 개정)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 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2025.12.10. 본 항 개정)
-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 1 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 1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제 12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021.3.30 본 항 개정)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2021.3.30 본 항 개정)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명의개서 및 질권등록) (2021.3.30. 삭제)

제 14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2021.3.30. 삭제)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8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021.3.30 본 항 개정)
- ②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한 후 3 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15 조의 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 조의 2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2021.3.30 본 조 신설)

제 3 장 사채

제 16 조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1 조 제 1 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정관 제 11 조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3.30 본 조 신설)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9 조 제 1 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정관 제 11 조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3.30 본 조 신설)

제 18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21.3.30 본 조 신설)

제 19 조 (준용규정)

제 12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1.3.30 본 조 개정)

제 4 장 주주총회

제 20 조 (주주총회 구분 및 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 21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35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3.30 본 항 개정)

제 22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 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5.12.10. 본 항 개정)
- ② (2025.12.10. 삭제)

제 23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4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 35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3.30 본 조 개정)

제 25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021.3.30 본 항 개정)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6 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6 조의 2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의 모회사 및 회사의 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021.3.30 본 조 신설)

제 27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본인 또는 자신이 적법하게 임명한 대리인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 29 조의 2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3.30 본 조 신설)

제 30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 감사

제 31 조 (이사의 수와 선임)

- ①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한다. (2021.4.27, 2025.12.10 본 항 개정)
-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2025.12.10. 삭제)

제 33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4 조 (이사의 결원과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 31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2025.12.10. 삭제)

제 35 조 (이사의 직무 및 보고의무)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는 매 분기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21.4.27, 2025.12.10 본 항 개정)
- ⑥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21.3.30 본 조 개정)

제 36 조 (감사)

- ① 회사는 1 인 이상의 감사를 두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③ 감사 중 결원(제 1 항의 최저 원수를 결하는 경우를 말한다)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선임한다. (2025.12.10 본 조 개정)

제 37 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25. 12. 10. 본 조 개정)

제 38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2021.4.27, 2025.12.10 본 조 개정)

제 39 조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2021.3.30. 삭제)

제 6 장 이사회

제 4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 41 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가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이사의 소집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의 소집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2 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21.4.27, 2025.12.10 본 항 개정)

제 42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3 조 (운영)

이사회는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44 조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40 조 내지 제 42 조, 제 4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3.30 본 조 개정)

제 45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의사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2021.4.27 본 조 개정)

제 45 조의 2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021.3.30 본 조 신설)

제 45 조의 3 (감사위원회의 구성) (2025.12.10 삭제)

제 45 조의 4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2025.12.10 삭제)

제 45 조의 5 (감사록) (2025.12.10 삭제)

제 7 장 계 산

제 46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7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5.12.10 본 항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2021.4.27 본 항 개정)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4.27, 2025.12.10 본 항 개정)
-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2021.3.30 본 조 개정)

제 47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2025.12.10 삭제)

제 48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의 매 사업연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9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제 1 항의 이익배당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여도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처리한다. 단,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2021.3.30 본 조 개정)

제 8 장 보 칙

제 50 조 (삭제)

제 51 조 (세칙제정) (2021.3.30. 삭제)

제 52 조 (적용범위)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이 회사는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 동 분할로 인하여 이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 등에 대하여서는 2016 년 1 월 21 일자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 3 조 (사업연도에 관한 특례)

이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 46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발기인)

이 회사는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에서 Tstore 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발기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분할 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2016 년 1 월 21 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진 우

부 칙(2016. 3. 2)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10)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 9.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 3. 30.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

이 정관의 내용 중 관련법령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내용은 회사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장회사에 더 엄격한 조치를 정하고 있는 법령규정의 내용이라면 상장 전이라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21. 4. 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 4.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

이 정관의 내용 중 관련법령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내용은 회사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장회사에 더 엄격한 조치를 정하고 있는 법령규정의 내용이라면 상장 전이라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22. 3. 2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 3.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 5. 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 12. 10. 부터 시행한다.